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 심사기준 도입개요 및 운영방안

-문화재수리 관계자 대상 설명자료-

2016. 10

# CONTENTS

---

**Part 1.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개요**

**Part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Part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해설**

# 2016년 전국 대상 권역별 설명회 일정

## 1. 전체일정

권역	일자	시간	지역	장소
대전/충북/충남	10월 13일 (목)	13:00 ~ 17:00 (4시간)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강당
부산/울산/경남	10월 17일 (월)		부산	백스코 211호
대구/경북	10월 19일 (수)		대구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본관동 3층 강당
서울/경기/인천/ 강원/제주	10월 20일 (목)		서울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
광주/전북/전남	10월 24일 (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201호

# 2016년 전국 대상 권역별 설명회 일정

## 2. 세부일정

구분	대상	시간	소요시간	내용	담당자
1부	지방자치단체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	13:00 ~ 13:05	5분	인사말	- 문화재청 정영훈 수리기술과장
		13:05 ~ 13:35	30분	문화재수리 현장점검 결과 및 안내	- 문화재청 정석 사무관 - 문화재청 김봉두 주무관
		13:35 ~ 14:25	50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범 사업 적용 관련 발표	-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연구실장
		14:25 ~ 14:55	30분	질의응답	- 문화재청 김상규 사무관 - 문화재청 신미정 주무관 -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연구실장
		14:55 ~ 15:00	5분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 문화재청 정영훈 수리기술과장
		15:00 ~ 15:30	30분	휴식	
2부	문화재수리 업체	15:30 ~ 15:35	5분	인사말	- 문화재청 정영훈 수리기술과장
		15:35 ~ 16:25	50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시범 사업 적용 관련 발표	-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연구실장
		16:25 ~ 16:55	30분	질의응답	- 문화재청 김상규 사무관 - 문화재청 신미정 주무관 -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연구실장
		16:55 ~ 17:00	5분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 문화재청 정영훈 수리기술과장



## Part 1.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

# 1.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배경 및 필요성

## ▪ 목적

- ① 역사성·전문성·학술성을 지닌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문화재수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② 전문가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공공조달 계약제도 개선방향 도출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역량 강화

문화재수리 공공조달 계약제도 전반의 문화재 적격성 향상

문화재 특성을 반영한 공공조달 계약제도를 기반으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문화재수리 품질을 보장하는 비용과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행환경 구축

최저가 중심의 역량 평가  
및 시설공사 관점의  
낙찰제도 운용

송례문 복구공사와 관련 부  
실 수리의 핵심원인으로 최  
저가 중심의 문화재 수리역  
량 평가 및 수리 대상 문화  
재의 역사성, 전문성, 학술  
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공  
사 관점의 낙찰제도 운용

“운찰제” 형태의  
수리역량 평가 환경

실제 수리 역량에 대한 평  
가 부문의 변별력 저하로  
가격 중심의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수리능력과는 상  
관없이 수리업자로 선정되  
는 “운찰제” 논란 지속

수리 대상 문화재에 적합한  
수리능력 평가 기준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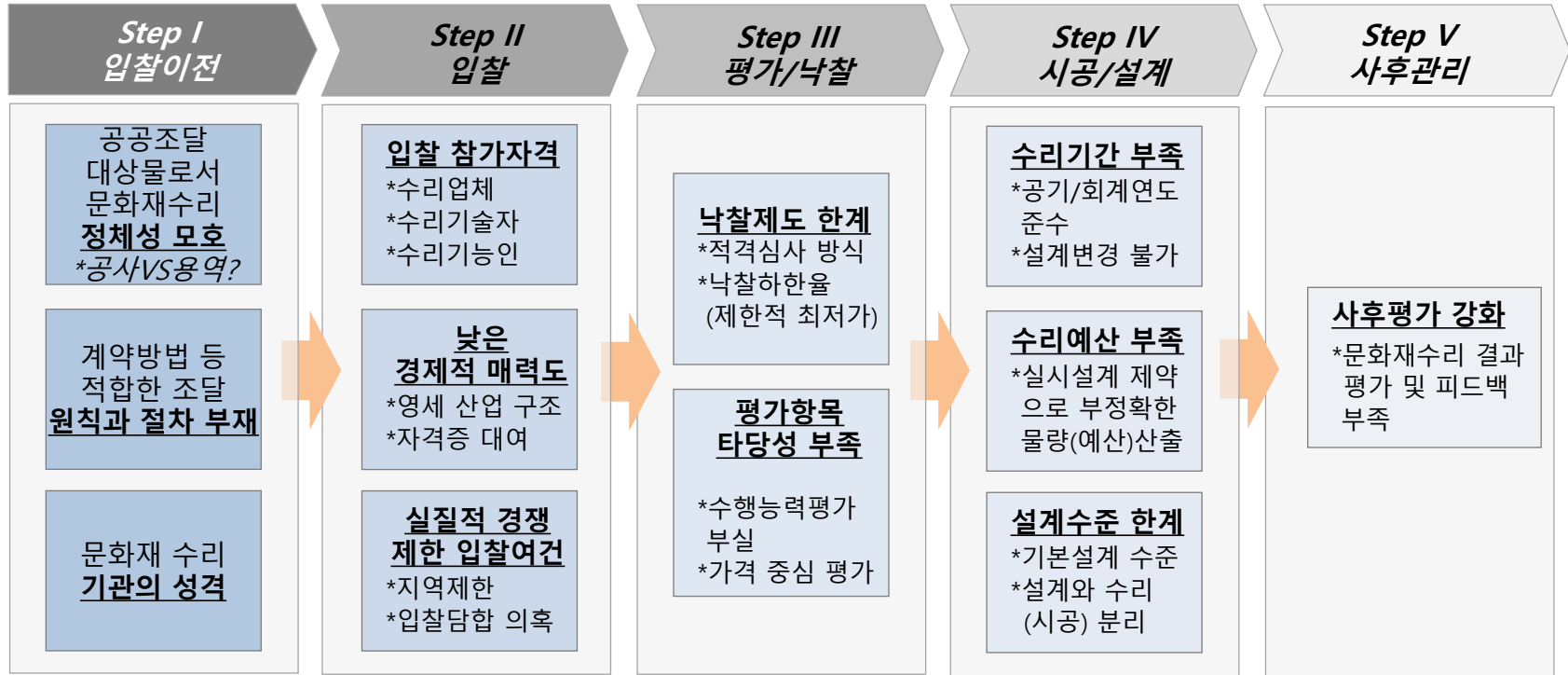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수리기법과 공법의 난이도  
와 관련 없는 평가 기준으  
로 인해 안정적 문화재 수  
리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리 품질 저하 발생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국정 운영 목표 미달성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부정  
적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여  
문화재 관리정책에 대한 불  
신이 팽배하여 문화융성을  
통한 국격 향상이라는 국정  
운영 목표달성에 부정적

# 1.2 문화재수리 제도 문제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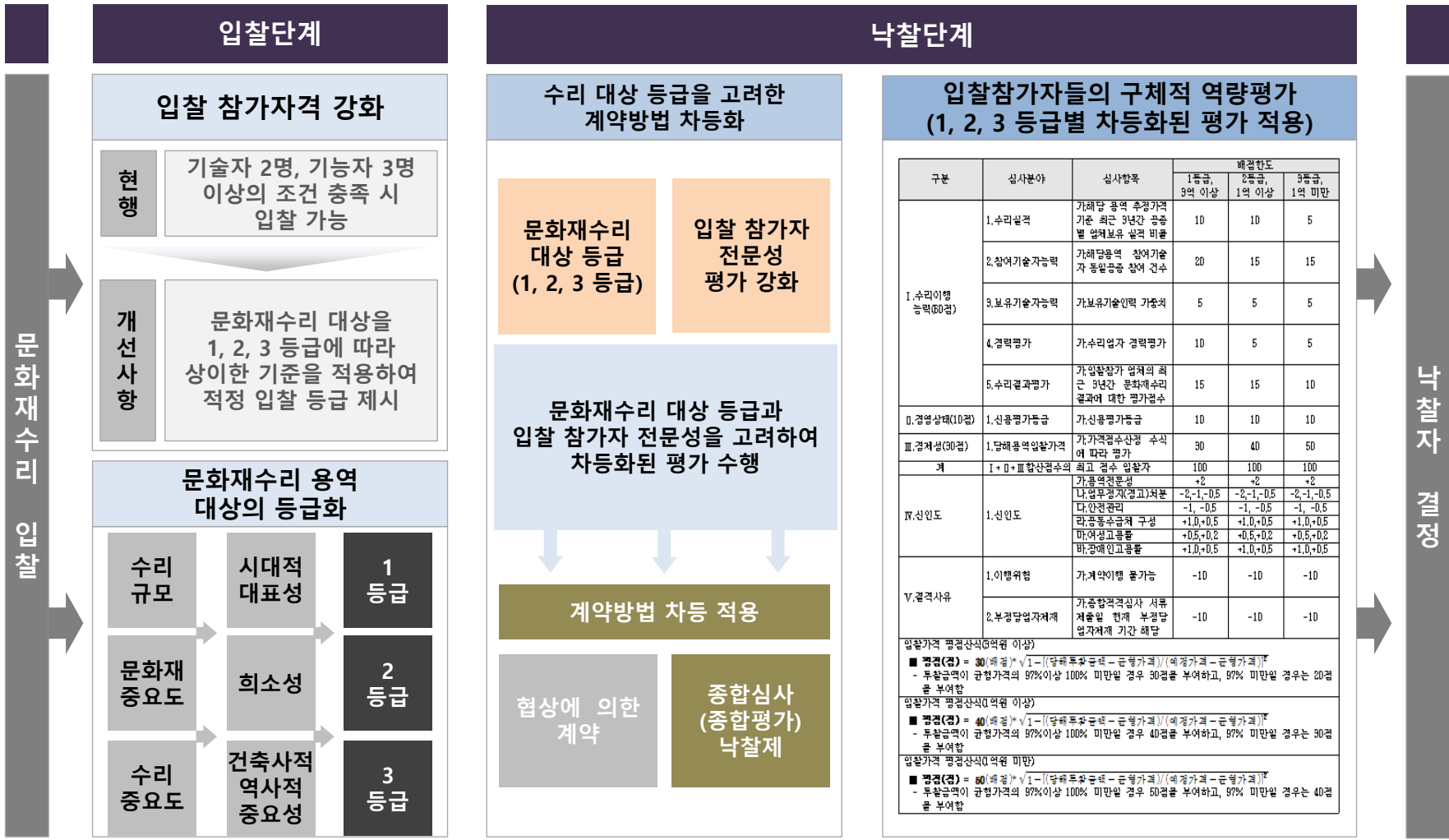
- 입찰이전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발생하는 단계별 문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공공조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 S1: 현행 체계는 **시설공사 조달 체계와 유사**(최저가낙찰제 또는 가격경쟁을 기반으로 한 적격심사제 적용)
- S2: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시공능력 평가 등 시설공사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자격증 대여 및 입찰담합 등의 문제 발생
- S3: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공사 시 입찰가격 70~90%, 수행능력 10~30%로 평가(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하고 있으며, 문화재수리는 3억 원 미만의 수리건이 80% 이상으로 **입찰가격이 평가를 좌우하게 되어 기술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
- S4: 설계변경 불가, 실측설계 한계로 산출물량 부정확 및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설계자가 수리과정 전반에 관여 불가**
- S5: 문화재수리에 대한 **평가체계 미흡**  
→ 따라서 **문화재 수리에 적합한 시설공사와는 구분되는 제안서 평가방식의 공공조달 시스템 도입 필요**

# 1.3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방안 도출

■ 문화재수리의 학술성, 역사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입찰 및 낙찰 프로세스의 통합적 개선





# 1.3 문화재수리 제도 개선방안 도출

- 현행 적격심사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수행되는 반면 개선 적격심사는 기술능력과 가격점수를 모두 종합평가 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방안1 : 기존 적격심사(2단계 평가)

1단계 : 가격심사(절대평가)

2단계 : 기술능력심사+가격심사(상대평가, 계량화)

입찰자 A 95

기술능력평가+가격점수평가=85점

- 낙찰자하한을 이상 최저가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 미달

입찰자 B 90 2순위

기술능력평가+가격점수평가=91점

- 낙찰자 선정

입찰자 C 85 1순위

입찰자 D 84

낙찰하한을 미달

예정가격 100, 낙찰하한을 85, 적격통과점수 90점

## 방안2 : 개선 종합평가

기술능력(70)

가격점수(30)

입찰자 A 67

25

=

92점

- 종합평가를 통해 최고점자인 입찰자 A 선정

최고가 입찰

입찰자 B 64

+

26

=

90점

입찰자 C 63

+

27

=

90점

입찰자 D 59

+

30

=

89점

- 기존 적격심사 시 입찰자 D 선정

최저가 입찰

적격통과점수 : 85점

# 1.4 주요 진행 경과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심사기준 마련 및 검증 과정]

구분	1, 2차 T/F	3차 T/F	지자체 워크샵	5차 T/F	6차 T/F	7차 T/F	8차 T/F
일시	14.04.21 14.07.11	14.08.05	14.09.23	14.11.04	14.12.04	15.01.09	15.01.23
주요 내용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중요도, 수리난이도/복잡성, 수리규모 등의 문화재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li> <li>용역 관점의 문화재수리 계약 제도 설계 시 문화재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 용역과 제도적 차별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분야로 구분되던 문화재수리를 용역분야로 구분</li> <li>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적정 낙찰방법 제안</li> <li>수리업체의 역량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동시 평가 필요</li> <li>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실측설계에 대한 설계변경 문제 해결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문화재수리 생태계 지속가능성 향상 필요</li> <li>다양한 공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액으로 계약방법 구분하지 말고 발주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계약방법 선택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을 중심으로 문화재 특성 적합한 실행(안) 필요</li> <li>가격 중심이 아닌 기술역량 평가 중심으로 가야하며, 독과점에 대한 주의 역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을 위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수정에 대한 검토 필요</li> <li>지방계약법 공사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비교 필요</li> <li>발주기관 중심의 계약체계 구성 필요</li> <li>현재 제시되는 (안)에 포함되는 명칭 정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적격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 필요성 검토</li> <li>시범사업 운영 검토 필요</li> <li>제시된 심사항목 및 기준 적절성 검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시설공사 관점의 문화재수리를 문화재 특성에 맞는 계약체제로 전환</li> <li>용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법령 개정 사항 無</li> <li>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시범사업을 운영</li> <li>1등급은 종합심사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2, 3등급은 종합심사 및 적격심사 적용</li> </ul>

기준 검증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6월 ~12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대한 시물레이션 및 모의입찰을 통해 심사기준의 적용 실효성 검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동 기간 중 9차~13차 T/F를 통해 산관학연 전문가 의견 지속 수렴)</li> <li>2016년 1월 ~ 2016년 9월 19~21일(14차 ~16T/F 진행) 유관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문화재청 고시(기재부 계약예규)와 행자부 예규로 시행 확정</li> </ul>
------------	--

# 1.5 종합심사(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안) 도출

- 문화재수리 산업 전방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 항목·배점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종합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된 모든 업체(351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자료를 수집함

## 나. 시뮬레이션 수행 및 1차 개정(안) 도출

## 2-2 시뮬레이션 모델설계 - 자료확보

### 자료확보

- 시뮬레이션 분석에 소요되는 기초자료(엑셀문서)를 수집하기 위해 우편, E-mail, Fax를 통해 협조 공문 발송 및 수신여부 확인
- 메일을 통해 문화재수리업체들로부터 작성된 기초자료(평가점수 근거자료 및 실제 자기평가서) 및 의견을 회신함
- 자료 수집은 3차에 쳐 약 60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83개 기업이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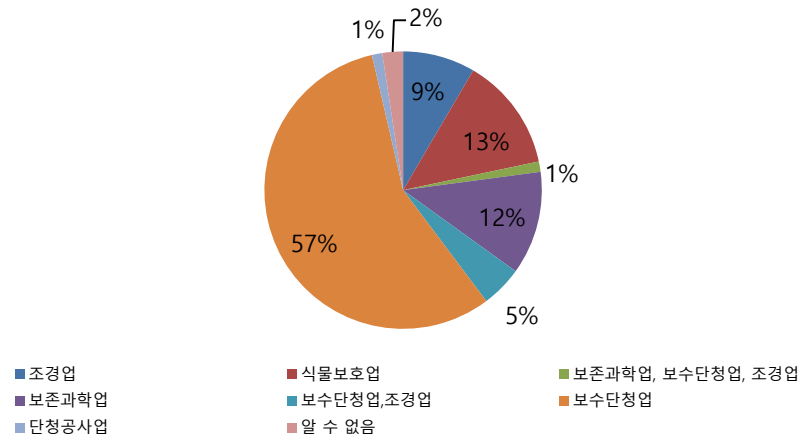
### 수집결과

- 시뮬레이션 기초자료를 제출한 83개 수리업체 가운데 보수단청업(57%)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식물보호업(13%), 보존과학업(12%), 조경업(9%)이 뒤를 이음
- 수리업체 소재지로는 경상북도(20%), 경기도(17%), 서울특별시(13%), 충청남도(11%) 업체의 참여도가 높음

### 수리업체 자료 협조 요청 및 수집



### 문화재수리업종 별 수집현황



# 1.5 종합심사(종합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개정(안) 도출

- 경영상태와 경제성분야의 기존 심사 분야인 신용평가등급 및 균형가격과 조정 심사 항목인 자산 및 유동비율, 투찰가격 평가 모델 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심사 항목별 설명력 분석을 통하여 심사분야의 배점 비중 및 실제 영향력이 가장 이상적인 자산 및 유동비율과 균형가격 심사항목 모델을 채택함

## 나. 시뮬레이션 수행 및 1차 개정(안) 도출

## 2-2 시뮬레이션 모델설계 - 심사분야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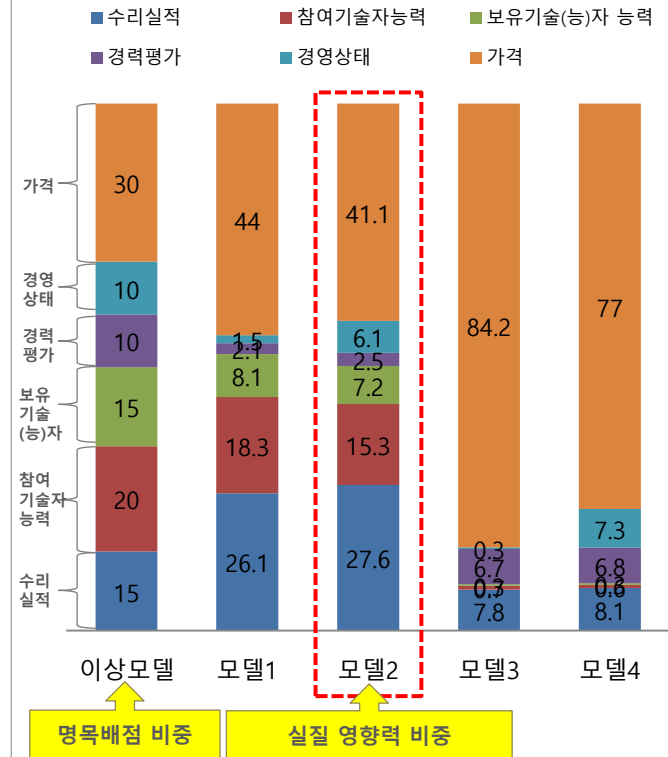
- 종합평가에 적용될 적절한 심사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후보 심사항목을 조합한 총 4가지 파일럿테스트 모델 설계
-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모델 별 심사 항목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자산 및 유동비율 + 균형 가격 모델"이 채택됨
  - 경영상태 심사항목인 신용평가등급과 자산 및 유동비율평가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음
  - 경제성 분야 투찰가격평가의 경우 가격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 종합평가 심사 항목으로 적절치 않음

심사분야별

설계모델

- 1 신용평가등급 + 균형가격
- 2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 균형가격
- 3 신용평가등급 + 투찰가격
- 4 자산 및 유동비율 + 투찰가격

심사항목별 종합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력



#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모의입찰 수행

- 문화재수리 산업 전방의 현황 및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심사 항목·배점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종합 및 전문 문화재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총 7건의 모의입찰을 시행함

## 모의입찰 진행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모의입찰 시스템에 입찰등급 및 업종에 따른 7개의 모의입찰 공고
- 모의입찰 협조공문과 모의입찰 안내문 Fax, e-mail 발송
- 국가종합전달 시스템을 통한 모의투찰과 이메일을 통해 업체별 '모의입찰 자기평가서 및 평가점수근거자료' 및 의견 회신
- 모의입찰 기간 : 2015년 12월 31일~2016년 1월 13일

### 국가종합전자조달 모의입찰 공고

CASE	공고번호-차수	공고명	입찰등급
1	20151229712-00	국가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 보수	1등급
2	20151229895-00	시도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 보수	2등급
3	20151229896-00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목조건축물 보수	3등급
4	20151229897-00	국가지정문화재 성곽 정비	1등급
5	20151229900-00	시도지정문화재 석탑보존처리	2등급
6	20151229901-00	경복궁 내 조경정비	2등급
7	20151229902-00	천연기념물 생육 환경 개선	3등급

## 모의입찰 결과

- 개찰 결과, 최대 47개의 종합수리업체, 14개의 보존과학업체, 11개의 조경업체, 4개의 식물보호업체가 입찰에 참여
- 모의입찰 업체 중 37개의 종합수리업체, 12개의 보존과학업체, 9개의 조경업체, 3개의 식물보호업체가 "자기평가서 및 근거자료" 를 회신함
- 자기평가서 회신업체 가운데 개찰결과 무효처리 되지 않은 유효입찰 업체를 대상 심사 후 낙찰자 결정함

### 모의공고 별 참여업체 현황

CASE	업종제한	입찰 참여 업체수	자기평가서 제출 업체수	유효입찰 업체수
1	종합수리업	47	37	20
2	종합수리업	47	37	30
3	종합수리업	47	37	29
4	종합/ 석공사업	36	29	20
5	보존과학업	13	12	8
6	조경업	11	9	4
7	식물보호업	4	3	2

#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모의입찰 수행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의 모의입찰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입찰 개찰 결과 산정된 평균 균형가격투찰율은 89.439%이며, 각 공고별 균형가격 투찰율은 아래와 같음

## 1 경제성(입찰금액) 항목 분석

- 제 8조 (균형가격 등의 산정)에 따라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7미만인 경우 무효입찰서로 제외
- 각 모의 공고별 유효입찰서 개수를 기준으로 균형가격을 산정함
  - 20개 이상인 CASE 1,2,3,4의 경우, 상위 40%와 하위 20%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 10개 미만인 CASE 5,6,7의 경우, 상위 50와 하위 10% 입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금액의 산술평균

### 개찰 및 균형가격 산출 결과

CASE	공고명	기초금액	예정가격	기초금액대비 예정가격비율	균형가격	균형가격 투찰율	비고
1	국가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 보수	400,654,000	403,368,475	100.678%	365,929,514	<b>90.718%</b>	1등급 입찰
2	시도지정문화재 목조건축물 보수	188,530,000	189,853,500	100.702%	167,983,792	<b>88.481%</b>	2등급 입찰
3	지정문화재 주변정비 목조건축물 보수	77,650,000	78,145,675	100.638%	69,348,278	<b>88.742%</b>	3등급 입찰
4	국가지정문화재 성곽 정비	514,610,500	515,936,950	100.258%	462,656,125	<b>89.673%</b>	1등급 입찰
5	시도지정문화재 석탑보존처리	248,512,000	248,678,525	100.067%	217,414,800	<b>87.428%</b>	2등급 입찰
6	경복궁 내 조경정비	201,712,000	204,468,950	101.367%	189,709,680	<b>92.782%</b>	2등급 입찰
7	천연기념물 생육 환경 개선	60,012,450	60,880,575	101.447%	53,725,700	<b>88.248%</b>	3등급 입찰
<b>균형가격 평균 투찰율</b>						<b>89.439%</b>	

#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모의입찰 수행

- 시뮬레이션과 모의입찰을 통해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별 낙찰 가능한 최저점수를 통과하는 업체 비율을 확인해 낙찰가능 기준점수의 적정성과 신인도 점수 영향력의 적정성을 검증함

## 2 낙찰기준점수 통과율 비교분석 - 기본 종합점수 vs 종합점수(신인도 포함)

- 1차 개정(안)에 따른 모의입찰결과, 신인도 점수의 영향력이 낙찰가능 최저 점수(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신인도 항목 가점을 조정함
- 모의입찰에 최종 개정(안) 적용 결과, 신인도 점수는 줄었으나 '보유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 기준 완화로 종합점수 평균이 상승하여 낙찰기준 점수 통과업체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

낙찰가능기준점수 통과 업체 비율

CASE	시뮬레이션 결과('15. 12. 18)		모의입찰 결과				비고 입찰등급 (최저 점수)
	1차 개정(안)		1차 개정(안)		최종 개정(안)		
	기본종합점수	종합점수	기본종합점수	종합점수	기본종합점수	종합 점수	
1	44.6%	66.3%	35%	70%	57.1%	71.4%	1등급(93점)
2	77.1%	83.1%	56%	80%	70%	80%	2등급(90점)
3	91.6%	92.8%	62%	86%	75.9%	86.2%	3등급(86점)
4			50%	60%	55%	60%	1등급(93점)
5			75%	75%	75%	75%	2등급(90점)

\* 기본 종합점수 : 수리이행능력 + 경영상태 + 가격점수

\* 종합점수 : 수리이행능력 + 경영상태 + 가격점수 + 신인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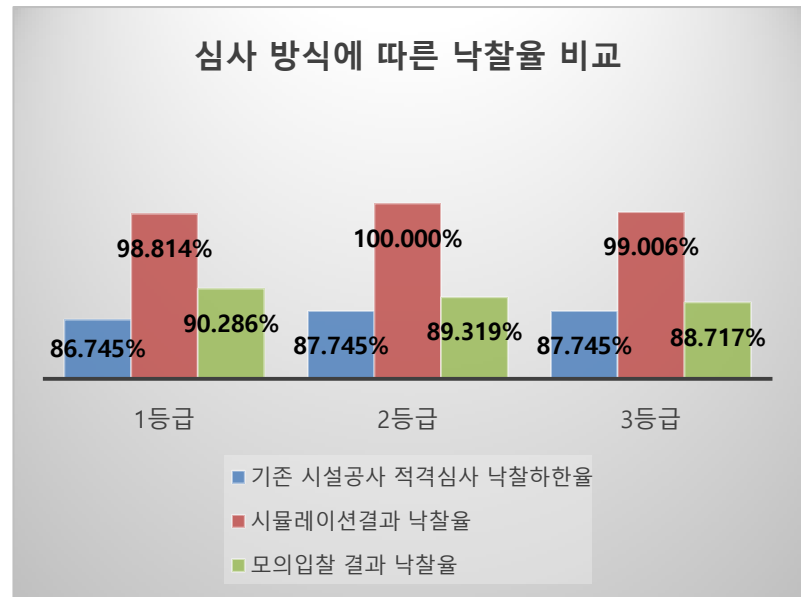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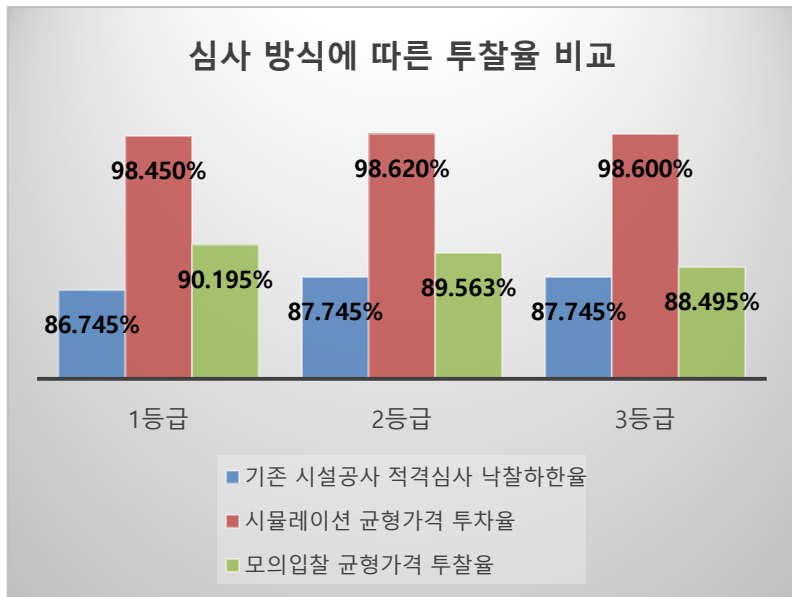
#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모의입찰 수행

- 균형가격 평가방식 적용한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심사결과 기존 시설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보다 높ی 균형가격이 산정되었으며, 낙찰율 또한 상승함

##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심사 모의입찰 최종결과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심사에 균형가격 평가방식을 적용한 결과, 모의입찰 낙찰율은 기존 시설공사 적격심사 방식에 비해 1~3% 증가한 88%~90% 대에 형성됨
- 시뮬레이션과 모의입찰 결과 낙찰율은 균형가격 투찰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기존 제한적인 최저가(낙찰하한율)에 상관없이 낙찰자에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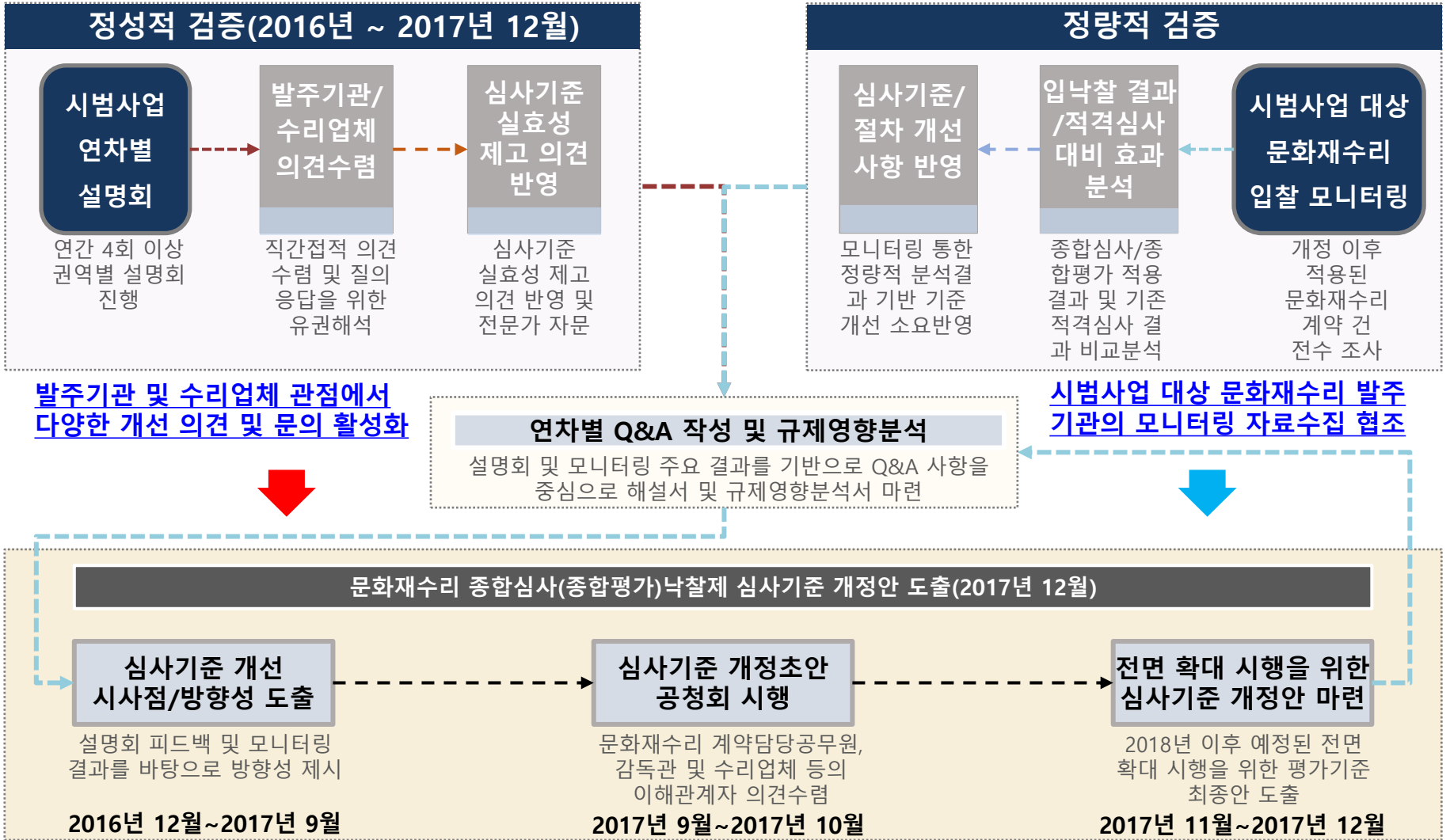
모의입찰 공고별 낙찰자





# 1.7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시범사업

- 2014년 4월 이후 산관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마련된 문화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심사기준의 전면 시행에 앞서 2016년 9월~ 2017년 12월까지 약 1.6년간 시범사업 실시



# 1.7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제 시범사업

▪ 2016년 15개 사업(하기 표 참조), 2017년 45개 사업 등 총 60개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 예정

연번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수리유형	발주부서	평가기준
1	서울		사적 162	북한산성	대성문 및 육축 해체보수	성곽	서울시 재무과	종합평가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	부산	금정구	사적 215	금정산성	서문 성곽 해체 및 보수	성곽	금정구 문화공보과	
3	경기	포천시	사적 403	포천 반월성	성곽보수	성곽	포천시 문화체육과	
4	전남	나주시	사적 483	나주목 관아와 향교	발굴지 정비	유적지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5	서울	종로구	사적 143	서울 문묘와 성균관	항문복원계단설치, 담장맞춤문등보수	목조건축물	종로구 문화과	
6	강원	원주시	사적 447	원주 영원산성	성곽복원	성곽	원주시 문화예술과	
7	충남	부여군	사적 58	부여 나성	유구정비	성곽	부여군 문화재 사업소	
8	충남	아산시	중민 233	아산 견재고택	고택 보수	목조건축물	아산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9	전북	남원시	국보 10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적목당 복원	목조건축물	남원시 문화관광과	
10	전북	전주시	보물 583	전주 풍패지관	서익현 드잡이 보수 및 정비	목조건축물	전주시 전통문화과	
11	울산	중구	사적 320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 복원	성곽	울산 중구 문화관광실	
12	제주	서귀포시	중민 188	성읍민속마을	성곽정비	성곽	제주도 문화유적관리과	
13	서울	종로구	사적 123	창경궁	창경궁 화장실 건립	-	궁능문화재과	종합심사 (문화재청 예규 제169호)
14	서울	종로구	사적 121	사직단	사직단 부대시설 정비	-	궁능문화재과	
15	서울	종로구	사적 122	창덕궁	창덕궁 매표소 주변 등 종합정비	-	창덕궁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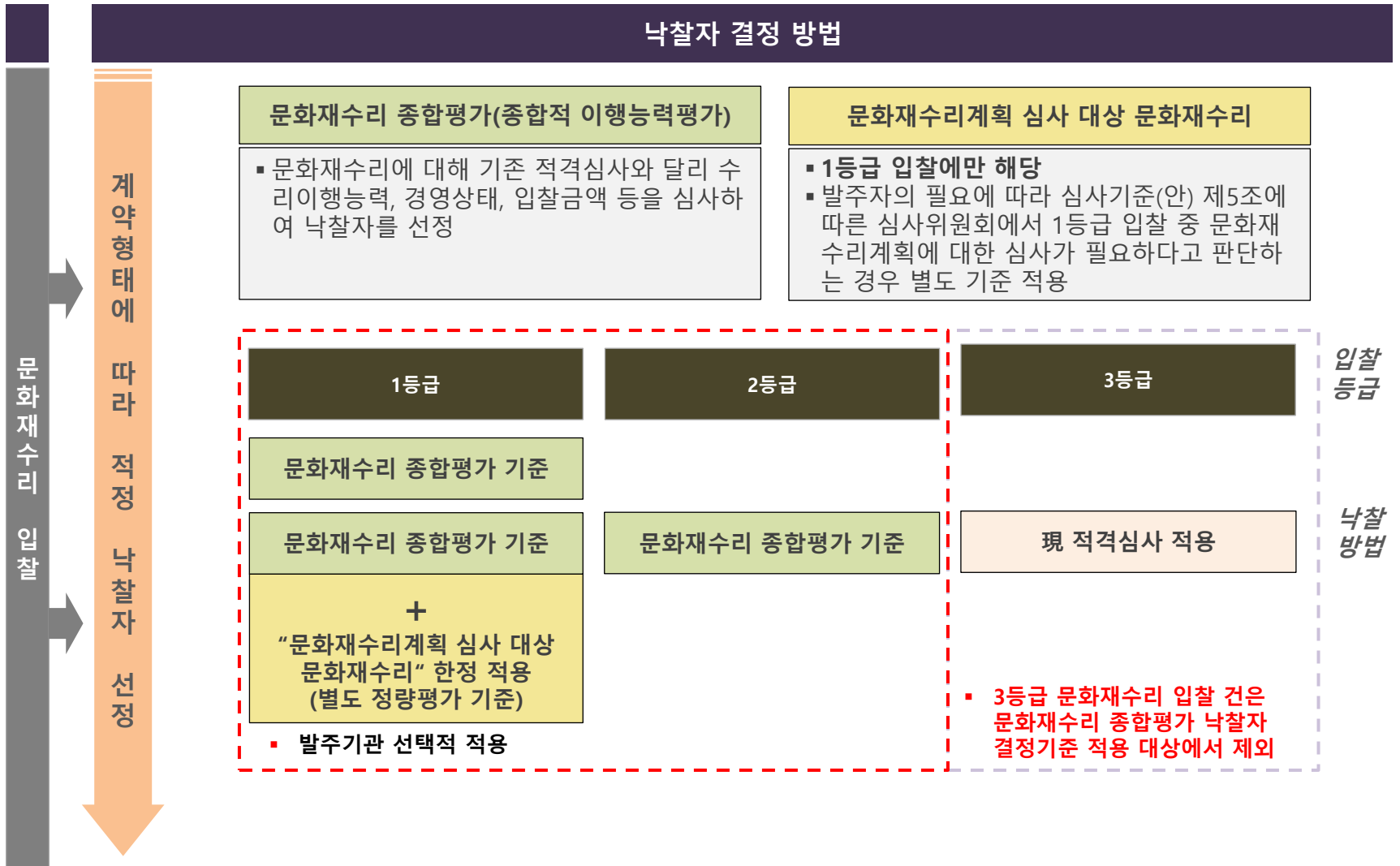


## Part 2.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 2.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종합)

- 문화재수리 입찰은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여 발주된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 등급에 따라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및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대한 심사기준을 각각 적용



## 2.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종합)

- "입찰등급"이란 문화재수리 입찰 시 문화재 중요도, 문화재수리 난이도, 수리규모 등을 평가하여 부여되는 등급
- 입찰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뉘며 입찰등급 별 상이한 이행능력심사 배점기준이 적용됨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기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I.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 문화재 (가 지정 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 문화재 (가 지정 문화재 포함)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II. 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4개 이상의 공종	중	
	0-2개 이상의 공종	하	
III.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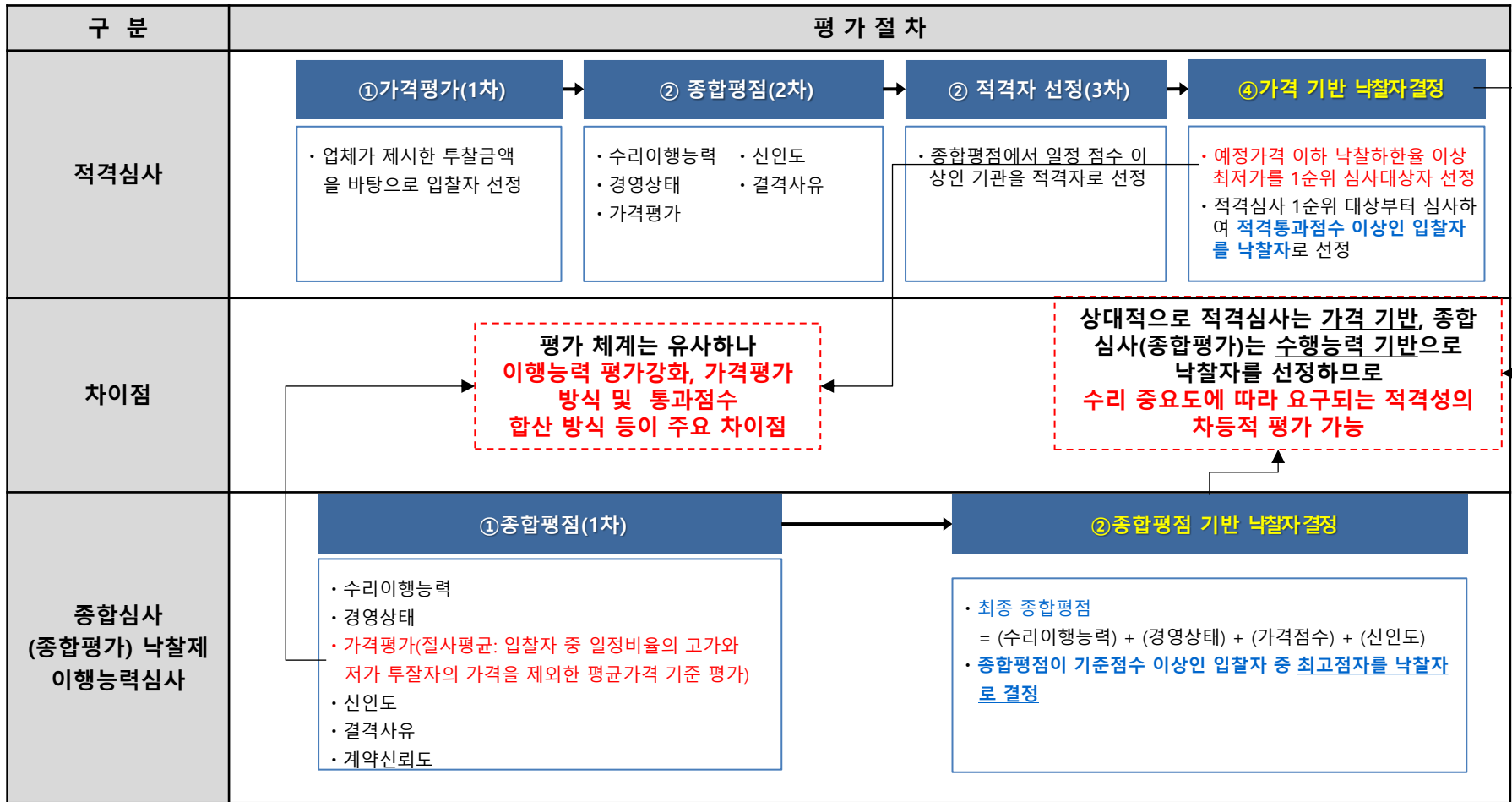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중요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복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 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2.1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종합)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으로 문화재수리 이행능력심사를 통해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프로세스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1. 적용기준

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조 참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조 참고



### 2. 적용대상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조 참고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3. 원가계산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조 참고

####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 별도의 원가계산 규정을 따름

- ▶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원가계산을 따름

### 4. 입찰등급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참고

####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 입찰등급의 결정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름

#### 계약담당자가 입찰등급을 결정 할 수 있는 경우

- ▶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음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5. 입찰공고 명시사항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참고

####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들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 코드번호
-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 23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함)
-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 복합업종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 입찰인 경우 주된 공종만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일 때 70%로 차감하여 실적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사전명시 하여야 함**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6. 균형가격 산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 참고

####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 ▶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 산정(소수점 이하 절사)

입찰서 개수	입찰금액 제외범위
① 1개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함
② 20개 초과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
③ 10개 이상 20개 이내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
④ 10개 미만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 •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② ~ ④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7. 심사항목 및 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조 참고

#### 입찰등급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1등급

- ▶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 종합평가 하여 낙찰자 결정(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1] 참조)
- ▶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3-2]참조)

##### 2등급

- ▶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 종합평가 하여 낙찰자 결정(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4]참조)

##### 3등급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 계약담당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음
- ▶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7. 심사항목 및 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조 참고

#### 세부심사 방법

- ▶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5] 참조)
- ▶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 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6] 참조)
- ▶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7] 참조)
- ▶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7] 참조
-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9] 참조)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8. 종합점수산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5조 참고



-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
-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9. 낙찰자 결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6조 참고

-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함

### 10. 입찰결과의 공개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7조 참고

- 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함
-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2.2 발주기관 검토사항

### 실적 증명서 발급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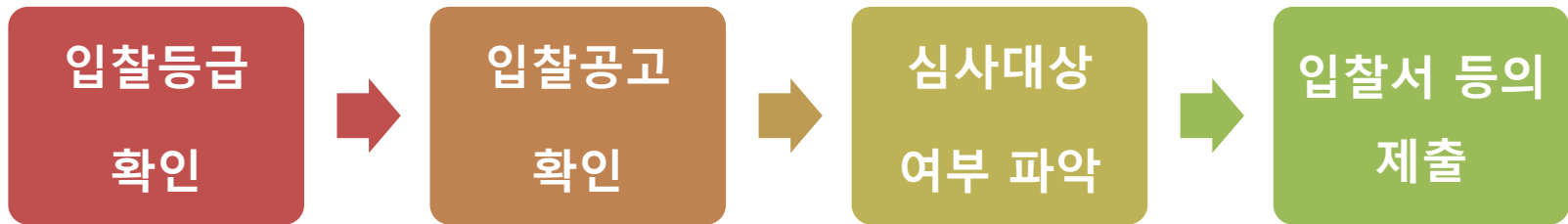
####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현재 수리코드가 명기된 실적증명서 발급시스템 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적증명서 발급은 해당 문화재수리를 발주한 기관의 감독관(또는 계약담당자)이 해당 문화재수리 공종 및 공종별 공사금액을 고려, 수리코드를 부여하여야 함
2. 한 건의 문화재수리에 복수 공종이 포함된 경우 기본적으로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수리코드가 명기되어야 하며 주된 공종은 공사금액 비중으로 결정함
3. 해당 문화재수리가 "주변정비" 등의 수리명으로 입찰이 이루어졌고 실제 공사금액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수리가 해당 수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변정비로 수리코드가 부여되어야 함(실질적으로 당해 문화재수리 및 해당 수리 공종이 중요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단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수리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공종을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특히, 실적 발급기관으로서 다수의 업체에서 동일 또는 서로 다른 문화재수리 건에 대한 수리코드가 부여된 실적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이전에 발급실적이 있는 동일 문화재 수리 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수리코드가 부여되지 않도록 실적발급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2.3 수리업체 검토사항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프로세스



#### 1. 입찰등급 확인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4조 참고

####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 입찰등급의 결정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름

## 2.3 수리업체 검토사항

### 2. 입찰공고 확인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참고

#### 입찰공고 내용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 코드번호
-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 23조 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함)
-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 2.3 수리업체 검토사항

### 3. 심사대상 여부파악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8조 참고

#### 결격사유

- ▶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문화재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
- ▶ 위 사유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 2.3 수리업체 검토사항

### 4. 입찰서 등의 제출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 참고

#### 제출서류 목록

1. 입찰서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1호 서식 참조)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2호 서식 참조)
4.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3호 서식 참조)
5. 문화재수리계획서(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11호 서식 참조)
6. 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0]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7.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 2.3 수리업체 검토사항

### 4. 입찰서 등의 제출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8조 참고

#### 실적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실적증명서 발급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 예규 65)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평가 분류한 "수리코드"가 명기되어야 함.
2. 한 건의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복수공종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수리코드가 명기되어야 하며 주된 공종은 공사금액 비중으로 결정함.
3. 동일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최초 평가분류하여 실적 증명서가 발급된 실적에 대하여 다음 입찰 등에서 다른 "수리코드"가 기재되어 접수될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따라서 실적 발급기관에서 일차적으로 문화재수리 실적별 수리코드가 발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문화재수리업체 역시 수행실적에 대해 수리코드가 부여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통해 실적별 수리코드의 무결성 확인이 필요함.

## 2.4 입찰공고문 예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16년 소쇄원 보수정비사업

나. 위 치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다. 공사개요 : 담장보수, 석축정비, 측벽 보수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0일

마. 추정금액 : 12,751,200,000원(추정가격: 11,592,000,000원, 부가가치세: 1,159,200,000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8,925,840,000원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종합평가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입찰 전 설계내역, 사업물량 등은 우리 군 문화체육과(061-380-2812)에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를 위한 필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문화재수리 입찰등급 : 입찰등급 1등급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 제4조 관련)

2) 문화재수리 계획심사 대상 여부 : 비해당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 제5조 제3항 관련)

3) 문화재수리 코드 : 111(목조건축물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4) 수리 전문성 평가 지역 : 전라남도 광주

## 2.4 입찰공고문 예시

###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에 등록 된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낙찰제 시범사업 대상 입찰로서 입찰참가자는 별지의 “종합심사 자료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4 입찰공고문 예시

###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은 우리 군 문화체육과에서 설계서 열람으로 같습니다.  
(담양군 문화체육과 ☎ 061-380-2812)

### 5.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입찰)일시	비고
2016.08.25(목) 10:00	2016.09.01(목) 10:00	2016.09.01(목) 11:00	개찰전용PC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2.4 입찰공고문 예시

###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군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 8. 낙찰자결정 방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입찰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합니다.
  - ☞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8,114,400,000(약 81억원)입니다.
  - ☞ 동일 문화재수리 판단을 위한 주된 공정은 문화재 수리코드 111입니다.
- 나. 동일한 종합점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원본을 우리군 세무회계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 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4 입찰공고문 예시

### 9. 종합평가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나. 종합평가 제출서류

- 종합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기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자기평가 기술서, 자기평가 증명서, 문화재수리계획서(대상 문화재수리인 경우),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 서류 등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 제8조 참조

다. 서류 제출기한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관계 구비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 제8조 관련).

###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아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해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보험료 사후정산 등(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 20)

###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4 입찰공고문 예시

###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01.20)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호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합의서 및 노무비 통장사본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3.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입찰개시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며, 입찰참가자에 의하여 다수 추천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공휴일인 경우 전전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4 입찰공고문 예시

-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바. 계약자는 공사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사. 낙찰자는 우리군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비 임차, 인력고용, 지역업체 물품 이용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을 위한 자율협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 자.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임금지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 및 장비임대료 등의 체불 발생 시 체불을 해결한 후 청구하여야 하고 향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 계약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시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와 달리 인력을 운용할 경우 차기 입찰의 종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5호, 2016. 9. 21) 제7조 관련).**
- 카. 기타 구체적인 사항 중 공사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 문화체육과 (061-380-281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061-380-3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 입찰공고문 예시

- 금번 시범사업 모니터링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보가 필수적임

### 종합평가자료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본 000 문화재수리 입찰은 시범사업 대상 입찰로서 제출된 종합평가자료(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000호, 2016. 9.21) 제8조 관련 모든 서류)와 가격입찰 자료를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본 입찰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목적 이외에 연구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됩니다.

1. 종합평가자료를 제공 받는 자 - 담양군
2. 종합평가자료 수집이용목적 - 종합평가를 통한 낙찰자 선정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분석
3. 종합평가자료 수집항목 - 수집항목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000호 2016. 9.21) 제8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 일체 - 고유식별정보 : 기업명
4. 수집하는 종합평가자료의 제공 : 문화재청, 한국조달연구원
5. 종합평가자료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기간(2016년 9월 21일 ~ 2017년 12월 31일)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6.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종합평가자료의 수집 이용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의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종합평가자료는 평가 및 기준개선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종합평가자료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고유식별정보(기업명)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성명 : (서명)

담양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본 000 문화재수리 입찰은 시범사업 대상 입찰로서 제출된 종합평가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선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담양군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 종합평가를 통한 낙찰자 선정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분석
3.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4.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 문화재청, 한국조달연구원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기간(2016년 9월 21일 ~ 2017년 12월 31일)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6.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의 종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종합평가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평가 및 기준개선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비동의( )
20 년 월 일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성명 : (서명)

담양군수 귀하



## Part 3.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해설

---

# 3.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참고

## 1.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기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I.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포함)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II. 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4개 이상의 공종		중
	0-2개 이상의 공종		하
III. 수리 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구분	내용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 (16개)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 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 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 (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 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 붕 및 흙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 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함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 잡공사는 제외

# 3.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참고

## 2. 문화재수리 평가 체계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 규모	대	1	1	2	상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3.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참고

## 3. 입찰등급 산정 예시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중요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 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문화재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흙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리규모	대	1	1	2	상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 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 3.2 문화재수리 분류표

## 가. 지정문화재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150

## 나.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 보수 · 신축·복원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유적	유적지	· 분묘·발굴지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 성곽 정비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조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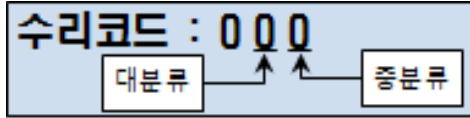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3.2 문화재수리 분류표

### 1) 동일 문화재수리

가.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



나.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문화재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문화재수리

2)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3) 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4)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3.3 입찰등급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3-1] 참고

#### 1-1. 입찰등급 1등급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재 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b>계</b>			<b>100</b>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 3.3 입찰등급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3-2] 참고

#### 1-2. 입찰등급 1등급 :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 △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문화재수리계획 (20점)	문화재수리계획능력	문화재수리계획	20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b>계</b>			<b>100</b>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 3.3 입찰등급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참고

#### 2.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보수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b>계</b>			<b>100</b>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1. 수리실적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10.0	20.0
			B. 20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1)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평가를 위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

나.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에 한함)

다.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 민간발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공사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1. 수리실적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300% 이상	20.0	10.0	20.0
			B. 20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2)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 100

☞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로 설정 가능 (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 가격'은 70억으로 한다.

3)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5)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참고

##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1)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2)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 가격’은 70억으로 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참고

##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5건 이상	10.0	7.5	7.5
			B. 4건 이상	9.5	7.0	7.0
			C. 4건 미만	9.0	6.5	6.5

3)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

$$\sum \text{보정계수} \times \text{등급계수} \times \frac{\text{해당문화재수리현장배치기간}}{\text{해당문화재수리기간}}$$

• 보정계수 : 해당문화재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 문화재수리기간 및 해당문화재수리 현장배치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4)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학·경력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부터 마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다.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에 한함)

라.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바. 고용보험피고험자격내역서(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각각 제출)

5)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6) 해당 문화재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 7)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 8)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 9)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10)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1)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다.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라.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 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마.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12)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13)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참고

##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	5.0	5.0
			B. 30점 이상	7.0	4.5	4.5
			C. 20점 이상	6.5	4.0	4.0
			D. 20점 미만	6.0	3.5	3.5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 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2)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연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 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8.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예) 해당 자격 취득 연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8점(= 2.0×10 + 1.0×8.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수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36점(=2.0×8 + 1.5×8 + 1.0×8)으로 산정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1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1인당 1부)

4) 해당 자격 취득 연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상시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동일한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말한다)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 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참고

####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2등급)
수리업 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10년 이상	5.0
			B. 10년 미만 7년 이상	4.8
			C. 7년 미만 5년 이상	4.6
			D. 5년 미만 3년 이상	4.4
			E. 3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1) 수리업경력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문화재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3)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가.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5. 신인도 심사

-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 1)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 상 문화재수리 실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1)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문화재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문화재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재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능력평가를 위해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

나.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민간발주에 한함)

다.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 민간발주 :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발주한 공사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5] 참고

## 5. 신인도 심사

### 2)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영업정지 처분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공문으로 확인하여 심사한다.

가. 영업정지 공문 사본 1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5. 신인도 심사

### 3) 안전관리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산업 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1) 산업재해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재해율가중평균}}{\text{건설업재해율가중평균}} \times 100$$

2) 재해율 가중평균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년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재해율 가중평균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재해율×0.5 + 전전년도의 최근 1년 전 재해율×0.3 + 전전년도의 최근 2년 전 재해율×0.2]

단,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 전 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 전 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4) '건설업 재해율의 가중평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행한 산업재해통계의 최근 3년 간 '건설업'기준 재해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5. 신인도 심사

###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u>1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과</u>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u>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u>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 문화재 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어야 한다.
-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 3.4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 5. 신인도 심사

### 5) 보수교육 이행실태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보수교육 이행	최근 5년간 보유 기술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보수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보수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보수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1) 보수교육 이수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최근5년간보수교육을이수한입찰자소속기술자수}}{\text{입찰자소속보유기술자수}} \times 100$$

2) 보수교육 이행실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한다.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나. 교육수료증 1부(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보수교육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말한다.

\* 교육수료증이란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등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 3.5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6] 참고

## 1. 자산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1) 경영상태 평가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2)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square \text{ 평가기준 비율} = \frac{\text{입찰자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text{전문직별공사업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 \times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3) 해당 문화재수리의 입찰공고문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 3.5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 2-1.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사례: 단독 입찰참가의 경우

제 37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b>자 산</b>		<b>부 채</b>	
<b>I . 유 동 자 산</b>	117,614,788,093	<b>I . 유 동 부 채</b>	48,709,125,588
1. 현금및현금성자산	18,163,145,51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1,100,143,948
2. 단기금융상품	7,676,772,548	2. 단기차입금	6,327,000,000
3. 매출채권 및기타채권	26,182,440,806	3. 유동충당부채	3,663,728,063
4. 재고자산	68,780,719,168	4. 기타유동부채	7,018,179,221
6. 기타유동금융자산	618,921,469	6. 기타유동금융부채	1,710,074,366
6. 기타유동자산	7,373,788,697	<b>II . 비 유 동 부 채</b>	26,736,318,797
<b>II . 비 유 동 자 산</b>	34,676,407,835	1. 장기차입금	20,000,000,000
1. 장기금융상품	3,371,906,119	2. 비유동충당부채	2,112,376,766
2. 매도가능금융자산	22,473,800,702	3. 기타비유동부채	3,623,942,031
3. 투자부동산	0	<b>부 채 총 계</b>	74,445,444,385
4. 유형자산	3,678,493,996	<b>자 본</b>	
6. 무형 자산	1,721,838,696	<b>I . 자 본 금</b>	60,447,432,500
6. 기타비유동채권	1,283,964,697	<b>II . 기 타 불 입 자 본</b>	6,743,136,062
7. 기타비유동자산	2,246,413,726	<b>III . 기 타 자 본 구 성 요 소</b>	309,433,020
<b>자 산 총 계</b>	162,291,195,928	<b>V . 이 익 잉 여 금</b>	21,345,749,961
		<b>자 본 총 계</b>	77,845,751,543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162,291,195,928

위와 같이 공고함.

2013년 3월 27일

 **주식회사 서한** 

**대표이사 조종수**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7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이재덕

- **입찰참가업체(아래 재무상태표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
  - 51.116%(자기자본비율) = 77,845,751,543원(자기자본) / 152,291,196,928원(자산총계)
- **입찰참가업체(아래 재무상태표 기준)의 유동비율**
  - 241.464%(유동비율) = 117,614,788,093원(유동자산) / 48,709,125,588원(유동부채)
- **입찰참가업체의 자기자본비율 평가결과**
  - 87.10%(평가결과)=51.116%(입찰업체 자기자본비율) / 58.69%(전문직별공사업 자기자본비율\*)
- **입찰참가업체의 자기자본비율 평가결과**
  - 101.75%(평가결과)=241.46%(입찰참가업체 유동비율) / 237.31%(전문직별공사업 유동비율\*)



# 3.5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 2-2.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사례: 공동수급체(3개업체기준) 구성 시 입찰참가의 경우

- 3개 업체 입찰 참가 시 개별 기업의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과정은 상기 단독 입찰 사례와 동일함.
- 업체별 평가결과 및 분담비율(가정)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비고	
평가결과	자기자본비율	87.10%	89.23%	102.72%	각 업체별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을 전문직별 공사비율로 나눈 값	
	유동비율	101.75%	92.32%	98.15%		
평점결과	자기자본비율	2.8	2.8	3.0	각 업체별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결과에 따른 환산 평가점수	
	유동비율	6.8	6.8	7.0		
참여비율		40%	30%	30%		
최종평점					합계	각 업체별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점결과에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값
	자기자본비율	1.12	0.84	0.9	<b>2.86</b>	
	유동비율	2.72	2.04	2.1	<b>6.86</b>	

➤ **최종평점 = 자기자본비율: 2.86점 / 유동비율 6.86점**

- 공동수급체 구성업체별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이 모두 최대 평점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순합산을 통해 최종 평이 만점을 획득할 수 없음
-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각 업체별 획득 평점결과에 참여비율을 곱한 값의 합산 값으로 평점 결과의 단순 합산 값이 아님

# 3.6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7] 참고

##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 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 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3.5% 이상	23.00	23.00	30.00
			B. 균형가격의 102.5% 이상 103.5% 미만	24.75	24.75	32.50
			C. 균형가격의 101.5% 이상 102.5% 미만	26.50	26.50	35.00
			D. 균형가격의 100.5%이상 101.5% 미만	28.25	28.25	37.50
			E. 균형가격의 99.5% 이상 100.5%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5% 미만	28.75	28.75	38.00
			G. 균형가격의 97.5% 이상 98.5% 미만	27.50	27.50	36.00
			H.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6.25	26.25	34.00
			I. 균형가격의 96.5% 미만	25.00	25.00	32.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1)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square \text{ 입찰가격 평가기준} = \frac{\text{해당투찰금액}}{\text{심사기준제9조2항에 따른 균형가격}} \times 100$$

## 3.7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행정자치부 예규 제 65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8] 참고

### 이행위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20

1)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 3.8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4)	-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 (2)	-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b>합계</b>		<b>20점</b>

1)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3) 감점대상은 문화재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3.9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문화재청 예규 제 169호  
「문화재수리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별표10] 참고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 기관	비 고
총 괄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수리 실적	4	가.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관할기초자치단체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다. 「문화재보호법」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기초자치단체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신청자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 확인표 각 1부	신청자	
		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부(기술자 각각 제출)	고용보험공단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부(기술자 및 기능자 각각 제출)	고용보험공단	

### 3.9 문화재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행 기관	비 고
수리업경력	7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9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별지 제4호 서식
		나. 「문화재보호법」 제36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각 1부(민간발주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민간발주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10	영업정지 공문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안전 관리	11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보수교육 이행실태	12	가.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교육수료증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경영 상태	13	최근 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문화재수리 계획	14	문화재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5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Q & A